



## 2015년 화장품 규정 개정 주요 내용

(2015년 7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)

### ▶ 주요 내용

#### ■ 화장품 품질관리의 합리화

##### □ 내용

- => 현행 150ml 초과 제품 내용량이 100% 이상이었던 기준을 97% 이상으로 완화
- => 즉 내용량 실험은 용량에 관계없이 97% 이상이면 모두 적합으로 간주
- => 개정 : 2014년 12월 23일

##### ▶ 관련규정

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(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기준) 3항 2호

#### ■ 페닐파라벤과 클로로아세타마이드 성분의 배합금지

##### □ 내용

- => Phenylparaben과 Chlorocetamide 성분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불가
- => 즉 살균 보존제로서 사용하던 상기 성분을 화장품 배합금지
- => 개정 : 2014년 12월 23일

##### ▶ 관련규정

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

(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한 사용기준) 별표 2

#### ■ 자외선차단 성분 2종 자외선차단 성분에서 제외

##### □ 내용

- => Glyceryl PABA 와 p-Aminobenzoic acid 2종의 자외선차단성분에서 제외
- => 즉 상기 2성분은 자외선 차단 고시성분으로 사용 금지
- => 개정 : 2015년 3월 25일

##### ▶ 관련규정

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제6조(제출자료의 면제등) 3항 [별표4]



■ 물티슈의 화장품 관리

□ 내용

- => 현행 공산품인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관리 변경
- => 물티슈를 화장품 "인체 세정용 제품류"로 분류하여 관리할 예정.
- => **시행일 : 2015년 7월 1일**

▶ 관련규정

---

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(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기준) 3항 2호

■ Xylene 과 형광증백제 성분의 배합금지 성분 추가

□ 내용

- => 자일렌 (Xylene) 과 형광증백제 성분을 배합금지 성분으로 추가
- => 자일렌은 피부자극과 신경독성등의 우려로 배합금지
- => 형광증백제는 피부 부작용과 발암가능성이 높은 물질로서 배합금지.
- => **예상 시행일 : 2015년 7월 ~ 8월**

▶ 관련규정

---

화장품법제 8조 (화장품 안전기준 등) 제1항, 2항

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(사용할 수 없는 원료) 별표 1

■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(MCIZ) 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(MIZ)의 배합금지

□ 내용

- => 사용후 씻어내는 인체세정용제품류에만 0.0015% 사용가능  
(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: 메칠이소치아졸리논= 3:1 배합이어야 함 )
- =>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
- => **예상 시행일 : 2015년 7월 ~ 8월**

▶ 관련규정

---

화장품법제 8조 (화장품 안전기준 등) 제1항, 2항

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

(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한 사용기준) 별표 2



■ Triclosan 의 배합금지 성분 추가

□ 내용

- => 사용후 씻어내는 인체세정용제품류와 데오도란트 (스프레이 제품 제외)  
    페이스파우더, 피부 결점을 감추기 위해 국소적으로 사용하는 파운데이션  
    ( 예 : 블레미쉬 컨설러) 제품류에만 0.3% 사용 가능
- =>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
- => **예상 시행일 : 2015년 7월 ~ 8월**

▶ 관련규정

---

화장품법제 8조 (화장품 안전기준 등) 제1항, 2항

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

(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한 사용기준) 별표 2

■ 화장품의 범위 확대

□ 내용

- => 현행 의약외품의 치약, 구강제품등을 화장품 범위로 포함
- => 화장품 적용부위를 "피부, 모발"에서 "피부, 모발, 치아 및 구강점막"으로 확대
- => **예상 시행일 : 2016년 1월 1일**

▶ 관련규정

---

화장품법제 2조 제1호 (정의)



## ■ 광고 가이드라인 개정

### □ 내용

#### ▶ 금지표현의 범위 확대

- => 아토피, 건선, 살균, 소독, 해독, 항균, 치료, 회복, 탄살, **디톡스, 필러, 재생**
- => 첨단기술, 의사가 개발한 화장품, 병원 추천, 보톡스
- => 無스테로이드, 배합금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현
- => 부작용이 없다. 먹을수 있다. 체내 노폐물 제거
- => **제품명에 "필러" 포함된 제품은 2015년 6월 30일까지 "필러"단어를 삭제하고, 판매해야 함. ( 유예기한 : 2015년 6월 30일까지)**
- => **Anti-wrinkle 은 기능성 승인 받으면, 사용가능**
- => **노화(안티에이징) 관련 단어는 광고에 사용금지**
  - # 예외 : 임상자료가 있으면 사용가능
  - # 주름개선 기능성을 받았어도 노화 (안티에이징) 관련 단어 사용금지함.

#### ▶ 관련규정

---

화장품 표시, 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[2015년 4월 30일 개정].